

# 2025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

## 1. 지원대상 : 농식품 수출업체

<신청 제외 대상>

- '수산물', '연초류', '비식품'은 지원 제외
- 지원대상 품목은 주된 원료가 농·임·축산물로 분류된 것이어야 함.
- 공고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
- 지자체, 중기부, 한식연 등 유관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
- \* 단,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지원대상 인증명에 해당하지 않는 인증(ISO14001, ISO9001 등)은 타기관과 중복 허용
- \* aT 내 해외인증등록지원을 포함한 타사업(단, 패키지(공모형)제외)과 중복 신청 가능하나, 동일 인증으로 정산은 불가
- \* 식품연구원 해외인증 지원사업 신청 제한업체 지원불가

## 2. 지원내용 :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%

- \* 지원항목 등 세부내역은 정산기준 참고
- \* 컨설팅 기관에 인증취득 지원 의뢰 시 aT 또는 한식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

## 3. 대상인증 :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인증

- \* 할랄(JAKIM, BPJPH, MUIS, KMF 등), GFSI 승인인증(FSSC22000, ISO22000, BRC, SQF, IFS, CHINA HACCP Global GAP 등), 해외유기인증, 코셔 등 별첨 지원대상 목록 참고
- \* ISO22000 신청 시 2023년, 2024년 수출실적 보유 의무
- \* FSSC22000, ISO22000 중복신청시 FSSC22000 우선지원
- \*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,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(예: ISO9001, ISO14001, ISO45001, HACCP 등은 제외)

## 4. 지원한도 : 20백만원

- \* 단, 복수인증 취득 업체에 한해 40백만원 지원
- \* 지자체, 중기부, 한식연 등 유관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 
(사업계획 신청 시 업체명, 인증종류 등 타 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필수)

## 5. 모집기간 : `25. 2. 14. ~ 2. 28.

- \* '25년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한 경우 지원 가능('25년 취득건)
- \* '25년 인증취득 완료(인증서 발급일 기준)건만 정산 가능

## 6. 신청방법 :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내 온라인 신청

- \* 로그인(신규업체 : 회원가입) → 상단메뉴[수출지원사업신청] → 해외인증등록 지원사업 모집공고 [사업신청] 버튼 클릭(기본정보 입력,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)
- \* 무역통계정보 동의서 미제출 업체 온라인 동의 필수 (계량평가 수출실적 조회)
- \* 제출서류 :(별첨양식) 사업계획서(신청서), 유의사항 인지조서, 해외인증등록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,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(기타) 외국어 카탈로그(가점사항), 2024년 매출액 증빙 (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원)

**7. 선정방법 : 계량 및 비계량 평가결과 50점 이상 충족, 고득점순**

\* 신선농산물 수출업체, 할랄인증 지원신청 우선선정 (50점 이상시)

**8. 선정절회 : 선정통보 후 2개월 내 착수증빙 미제출시 선정 철회**

\* 착수증빙 : 인증기관 접수증, 사업표준계약서, 계약금 입금내역, 대행기관 통장사본 등

**9. 정산신청 : 2025.11.30.까지 정산 서류 제출**

-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내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정산서류 입력
- 정산방식은 월 단위 수시 정산이며, 인증 및 비용집행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신청
- '25.8.31. 이후 사업포기시 차년도 사업 신청제한, 지원년도 포함 2년간 수출 실적 없을 경우 차년도 부터 지원 제한
- 배정예산 집행률 50% 미만시, '26년 사업참여 감점 부여

**10. 사업절차**

aT본사	인증지원 대상업체 모집공고 및 안내 (2월)
수출업체	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통한 온라인 신청 (2월)
aT본사	선정업체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/ 선정 내역을 관할 aT 지역본부에 통보 (3월)
aT지역본부	선정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 및 선정업체 사후관리 (4~11월)
수출업체	단계별 진행사항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내 입력 (4~11월)
aT지역본부	사업 착수여부 확인 / 선정 통보 후 2개월 내 착수증빙 미제출 시 선정 철회 (본사에서 선정 철회 통보 문서 시달)
수출업체	인증취득 완료 후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통한 정산서류 온라인 제출 (4~11월)
aT지역본부	증빙 검토 후 정산 (12월)

**11. 관련문의 : 수출기업육성부(061-931-0868) 또는 아래 aT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**

관 할	연락처	담당자	관 할	연락처	담당자
서울경기	031-8060-6040	오송은	강 원	033-920-1544	이은정
대전세종충남	042-389-5017	김다희	충 북	043-902-9531	김영신
광주전남	062-940-7015	박수이	전 북	063-904-5873	김지연
대구경북	053-218-4906	황동일	경 남	055-608-5826	김주은
부산울산	051-947-1086	배현지	제 주	064-900-8660	한수진
인 천	032-272-3012	여의진			

2025. 2. 14.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

# 참고 1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

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> 사업신청 > 모집공고 > 2025년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> 하단의 사업신청 버튼 클릭

**사업 신청 관리**

사업명 \* test

✓ 신청완료

**기본 정보**

사업자명/법인명 *	<input type="text"/>	사업자등록번호 *	400-81-12345
사업자 영문명 *	<input type="text"/>	생년월일 *	2025-02-13
대표자명 *	<input type="text"/>	대표자명(영문) *	<input type="text"/>
대표자 연락처 *	010 - 휴대전화번호 기 - 휴대전화번호 후		
대표자 이메일 *	이메일 입력 @ <input type="text"/> 선택		
설립년월일 *	2025-02-13	관리지사 *	강원지역본부
주소-본사 *	우편번호찾기 58326	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	현재주소

[신청화면 1페이지 시작부분]

**수출실적 증명 온라인 자동제출 ☞ 무역통계 제공동의 제출여부 확인(세창)**

\* 사업자번호로 동의 여부 바로 확인 가능, 기동의 일체는 재동의 불필요  
\* 사업자명의 공동인증서만으로 간편하게 동의서 제출 가능

복역
저장
삭제

[신청화면 1페이지 끝부분]

※ 저장클릭시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. 2페이지까지 작성을 완료하셔야 사업신청이 접수됩니다.

**해외인증 신청정보1**

인증명 *	선택	상세 인증명 *	상세 인증명 입력
인증기관명 *	인증기관명 입력	인증기관 소재국 *	소재국 선택 입력
신규취득/갱신여부 *	선택		
인증취득 시작(또는 예정)일 *	인증취득시작일 선택 ※ 신청 발표 이후 2개월 이내 마감수시 자동으로 신청 취소 예정	인증서 발급(또는 예정)일 *	인증서발급일 선택
인증 취득 형태 *	선택 ※ 자체취득으로 가점 부여받아 선정된 후,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대행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		
대행기관명 (없을 경우 없음 선택) *	대행기관명 선택 입력	대행계약 체결(또는 예정)일 *	대행계약체결일 선택
인증신청제품 수 *	선택		

[2페이지 인증신청]

## 참고 2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선정평가표(안)

### 1. 적합성 확인

구분	평가항목	평가기준	
인증 적합성	○ 취득(예정)인증의 지원대상 적합여부 * ISO22000 신청업체 직전연도 2개년 수출실적 보유 여부	적합	부적합
	○ 취득(예정)인증 품목의 적합여부	적합	부적합
	○ 신청업체의 지원대상 적합여부 * 타기관 유사사업 중복참여 여부 ○ 갱신/사후심사 신청 시 직전연도 2년간 수출실적 보유 여부 ○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 ○ 직전연도 9.30일 이후 사업포기 또는 정산미신청 업체 해당 여부	적합	부적합

### 2. 계량 평가(60점)

구분	평가내용	배점	평가기준				
수출 성장성 (50점)	최근연도 총매출액(원)	20	50억원 이상	30억 이상 50억 미만	20억 이상 30억 미만	10억 이상 20억 미만	10억 미만
			20	17	14	11	8
	직전연도 수출실적*	20	50만불 이상	30만불이상 50만불미만	10만불이상 30만불미만	10만불 미만	실적 없음
			20	16	12	8	4
	수출증가율 (직전연도수출액-전전연도 수출액)/전전연도수출액 *100	10	10% 이상	8% 이상 10% 미만	4% 이상 8% 미만	4% 미만	0% 이하
			10	8	6	4	2
수출 준비도 (10점)	외국어 카탈로그 (인쇄본 기준)	5	보유		미보유		
			5		0		
인증추진 형태	5	전체 인증 자체 추진		일부 인증 자체 추진		컨설팅 기관 의뢰 추진	
		5		2		0	

\*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활용, 수산실적 제외

\* 최대 5점 이내 가감점 운영(우수사례 선정 등)

### 3. 비계량 평가(40점)

구분	배점	매우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미흡	
인증취득 계획	인증취득 필요성	10	10	8	6	4	2
	취득 추진계획	10	10	8	6	4	2
인증연계 수출계획	제품 현황	10	10	8	6	4	2
	수출 추진계획	10	10	8	6	4	2

### 4. 선정기준 : 계량 및 비계량 평가결과 50점 이상 충족, 고득점 순으로 선정

\* 신선농산물 업체, 할랄인증 지원 신청 업체는 선정기준 충족시 우선 선정

## 참고 3 세부정산기준(안)

### 가. 기본제출서류

- 인증서 사본, 정산신청서 및 세부내역서(지정양식), 업체통장사본
  - 대행사를 통해 인증 취득 시 대행계약서, 세금계산서, 비용 납입(업체→대행사) 완료 영수증(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) 제출
- 동일 해외인증으로 aT 내 타 사업과 각각 정산 신청 불가

### 나. 인증취득비용 정산 세부항목 기준

구분	세부항목	기준	제출증빙
인증 취득 비용	심사비 및 등록비	○심사원의 인건비, 인증기관의 행정처리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	①인증기관 발급 인보이스 및 영수증 (은행 발행 계좌이체증 등) * 인증기관 → 업체 발행 인보이스,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사본
	실사비 (항공료)	○ 해외에 위치한 인증기관 실사단의 국제선 왕복 항공료 (economy) - 최대 2인	①항공티켓 또는 e-ticket ②여행사 인보이스 및 영수증 (카드전표,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) ③실사단의 한국체류 세부일정 * 실사단이 체류기간 중 타 업체 방문시 항공 료를 전체 방문업체 수로 나누어 해당분만 지급(1회 방한 다수 국내업체 실사 시)
	제품 시험비	○ 인증 요구사항에 따른 제 품분석비 및 시료운송비 (운송비 16만원 한도) <b>*미국 FDA 시설등록의 경우 영양성분 분석비 지원불가</b>	①시험기관 발행 세금계산서 (인보이스, 영수증, 카드전표,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) ②시험기관 발행 제품시험결과서 ③운송사 발행 세금계산서, 지출증빙사본 (인보이스 및 영수증 등) * 인증 등록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제품분석비만 정산(필요시 증명자료 제출)
대행 비용	통역 및 서류번역	○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번역 및 현장심사를 위한 통역비	①통번역사 프로필 ②통번역비용 지출증빙 (거래명세서, 영수증, 카드전표,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) ③통역결과보고서(현장사진 등) ④번역결과물(원문 및 번역본) * 매 건당 증빙자료 필수 제출 * 컨설팅비와 중복신청 불가
	컨설팅비	○ 인증 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시 발생하는 컨설팅비용	①컨설팅보고서 ②컨설팅기관에서 발급한 지출증빙 (인보이스 및 지출증빙 사본) * 인증별 400만원 한도
	교육비	○ 해당 인증취득을 위한 교육에 한해 인증별 최대 2인 지원	①교육결과보고서(사진포함) ②교육기관 이수증 ③지출증빙 사본 * 집합교육은 참석인원수/교육비용*2인으로 산출로 참석자 명단제출 * 컨설팅업체에서 실시한 교육은 신청 불가

구분	세부항목	기준	제출증빙
대행비용	예비심사비	○ 인증기관에서 수행한 예비심사비용(심사조건에 적합한 지를 본 심사에 앞서 심사하는 것)	①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예비심사보고서,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 사본 * 예비심사 : 심사조건에 적합한 지를 본심사에 앞서 심사하는 것 * 컨설팅기관 없이 자체 인증 취득 업체에 한함 * 컨설팅비와 중복신청 불가
	인증대행수수료	○ 인증대행(인증신청 및 접수 등)을 위한 수수료	① 인증대행기관에서 발행한 대행내역서 ② 인보이스 및 지출증빙 사본 * 인증별 200만원 한도 * 해외에 소재한 인증·등록기관 관련 직접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
정산불가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설설치비, 물품구입비, 지원업체의 해외현지 방문비용, 식비, 유류비, 선물비, 출장비(운영비), 렌터카 비용 등 인증 취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, 세부정산기준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정산 불가</li> <li>○ 실제 비용 지출을 증명할 적합한 증빙이 없는 항목 정산 불가</li> <li>○ 국내 발행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항목은 정산 불가</li> <li>○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수행한 하람·동물성성분 분석건 신청 불가</li> <li>○ 자체 추진으로 신청하는 업체는 대행비 정산 불가</li> </ul>		
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행비는 인정된 총 소요비용의 50% 한도 내 정산</li> <li>○ aT 지역본부는 비용 집행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은 정산 불가</li> <li>○ 영양성분검사, 제품시험분석비 등은 인증·등록에 필수요건인 경우에 한해 지원(필수요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)</li> <li>○ 환율은 실제 비용 지출(송금) 당시 적용된 환율로 인정 * 송금 당시 환율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송금일 기준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</li> <li>○ 정산금 지급 시 업체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개인사업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계좌로 송금해야 할 경우 담당자 승인절차 필요</li> </ul>		

### [참고] 지원업체 정산 승인금액 산출 절차

- ① 인증취득비용 및 대행비 확인 : 인증비(6,300천원)/대행비(4,800천원)
  - ② 대행비 한도 계산('총 소요비용'의 50%) : [ 11,100천원 × 50% = 5,550천원 ]
  - ③ '최종 정산승인금액(인증취득비용 + 50% 한도 적용된 대행비)' 산출
  - ④ '최종 정산승인금액'의 70%를 지원업체에 지급(연간지원 한도내)  
 $\text{정산승인금액} = \text{소요비용}[6,300\text{천원}(a) + 4,800\text{천원}(b)] \times 70\% = 7,770\text{천원}$
- \* 정산 지급액은 신청 시 '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'에 입력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된 배정예산한도를 넘을 수 없음

#### < 항목별 소요비용 예시 >

구분	정산세부항목	소요비용(원)	승인대상 금액
인증비(A)	심사/등록비	5,000,000	승인대상 인증비(a) 6,300,000원
	실사비	800,000	
	제품분석비	500,000	
	소계	6,300,000	
대행비(B)	통역/서류번역	800,000	승인대상 대행비(b) 4,800,000원 * 컨설팅비 400만원 정산 신청한도 적용 * 통역 및 서류번역비와 컨설팅비 중복불가
	컨설팅비	5,000,000	
	교육비	800,000	
	소계	6,600,000	
Total (C)= (A) + (B)		12,900,000	(6,300천원 + 4,800천원)×70% = 7,770천원

## 참고 4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지원대상 인증명 목록

연번	인증명		비고
1	ISO22000		* ISO22000과 FSSC22000 중복신청시 FSSC22000을 우선적으로 선정 * ISO22000은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함
2	GFSI 승인인증	FSSC22000	
3		BRC	
4		SQF	
5		IFS	
6		Global GAP	
7		China HACCP	
8		유기인증	USDA NOP
9	EU Organic		
10	JAS		
11	중국유기인증		
12	IFOAM		
13	유기가공식품 인증(한국)		
14	Halal		
15	Kosher		
16	Vegan		
17	EAC		
18	Gluten-free		
19	NON-GMO		
20	FSVP		
21	VQIP		
22	재외국 등록	USA FDA(미국)	
23		BPOM(인도네시아)	
24		VFA(베트남)	

\* 농식품 수출확대에 필요한 식품 안전 관련 인증제도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, 상기 외 인증은 검토과정을 거쳐 지원여부 결정

\* 상기 인증 외 신규 인증 지원이 필요한 경우 aT본사 담당자 문의

- 해당 인증 지원이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

## 참고 5 2025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정산신청서

<b>1. 신청업체</b>			
신청업체명		담당자 전화	
대표자		담당자 핸드폰	
사업자번호		담당자 이메일	
담당자		담당자 팩스	
주소			
<b>2. 인증 취득 결과</b>			
인증명		인증취득일자	
인증기관명		인증기관 소재국	
대행기관명		인증유효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인증등록제품	※인증등록제품 세부항목(지정양식) 필수 작성		
인증등록제품수		인증구분	신규인증취득 / 갱신
정산신청금액(원)  ※정산신청 세부내역서 (지정양식) 필수 작성	○ 인증취득비(A)		원
	○ 대행비(B)		원
	○ 총비용(A+B)		원
<b>3. 계좌입금처</b>			
예금주		은행명	
계좌번호			
<p>※ 상기와 같이 정산을 신청하오며, 동일건으로 aT 및 기타 유관기관으로 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 중복지원 또는 허위 자료제출 등의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금 회수(법정이자 포함) 및 공사 수출지원사업 참여 제재에 동의합니다.</p> <p>※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계획 등을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등이 발생한 때에는 aT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자료 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하겠습니다.</p> <p>※ 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 및 공사 사업계획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aT가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</p>			
		2025 년 월 일	
		신 청 인	(인)
<b>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</b>			
<b>&lt;첨부서류(필수)&gt;</b>			
1. 성과보고서(지정양식)			
2. 사업자등록증			
3. 인증서 사본 및 신청업체 통장사본			
4. 정산신청 세부내역서(지정양식)			
5. 인증등록제품 세부항목(지정양식)			
6. 관련 지출증빙 원본(사본은 반드시 신청업체의 원본대조필 날인)			

정산신청 세부내역서

○ 정산신청비용 : 인정소요비용 \_\_\_\_\_ 원 x 70% = \_\_\_\_\_ 원 (적용환율: \_\_\_\_\_ )

구 분	세부항목 (구체적으로 작성)	금 액		비 고 (적용환율)
		현지화	원화	
인증비	심사비 및 등록비			
	실사비(항공료)			
	제품분석비			
	소 계(A)			
대행비 (전체소요비용 의 50% 한도)	통번역비			
	컨설팅비			
	교육비			
	예비심사비			
	인증대행수수료			
	소 계(B)			
총 계(A+B) / (단위 : 원)				

\* 세부정산기준 참고하여 작성

인증등록제품 세부항목

인증/등록명	인증 기관명	인증취득일자/ 인증유효기간	인증구분 (신규/갱신)	품목명*	HS 코드

\* 품목명은 세부 품목명 기재

## □ 성과보고서

### ○ 계량성과

구 분		인증획득전 (2024년)	인증획득후 (2025년)(예상)	증가율 (전년대비,%)	비고 (신규수출국가명 등)
수출대상 국가수	업체전체				
	인증취득품목				
수출금액 (USD)	업체전체				
	인증취득품목				

※ 성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, 우수 성과보고서 제출 업체는 차년도 지원업체 모집 시 우대할 수 있음

○ 비계량 성과 ※ 인증 전·후 비교하여 항목별 사실관계 및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 기술

해외시장 개척 노력, 기존 거래선 수출 확대, 신규시장(바이어) 개척, 향후전망 및 기대효과 등을 기술